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1730

제안연월일: 2024년 4월 30일

제 안 자: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동 조례안 제4조제1항 후단에 규정된 학교 밖 청소년의 "개인정보를 연계"는 개인정보를 어디로 연계하여야 할지에 대한 대상이 누락되어 있고, 상위법인 학교밖청소년법에서 "지원센터를 연계"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"개인정보" 문구를 "지원센터"로 수정함.

- 동 조례안 제4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"개인정보를 연계"는 안 제1 항과의 조문체계상 "지원센터를 연계"로 수정함.
- 현행 학교밖청소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 학교장은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, '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' 문구를 '할 수 있다'로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"개인정보"를 "지원센터"로 수정함(안 제4조제1항).
- "개인정보를 연계"를 "지원센터를 연계"로 수정함(안 제4조제2항).
- "하여야 한다"를 "할 수 있다"로 수정함(안 제4조제3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"개인정보"를 "지원센터"로 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"개인정보를 연계"를 "지원센터를 연계"로 한다.

안 제4조제3항 중 "하여야 한다"를 "할 수 있다"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〈신 설〉	제4조(학교장의 책무) ①	제4조(학교장의 책무) ①-
	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	
	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	
	장(이하 "학교장"이라	
	한다)은 소속 학교의 학	
	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	
	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	
	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	
	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	
	내하고, 「학교 밖 청소	
	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	
	제15조에 따라 <u>개인정보</u>	<u>지원센터</u> -
	를 연계하여야 한다.	
<u>〈신 설〉</u>	② 제1항에 따라 <u>개인정</u>	②지원센터-
	<u>보</u> 를 연계하는 경우	
	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	
	에 관한 법률」 제15조	
	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	
	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	
	터 및 교육감이 운영하	
	는 도움센터에 제공할	
	수 있다.	
<u>〈신 설〉</u>	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	③
	소년이 재취학, 재입학을	
	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	

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	
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	
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<u>하여</u>	할 수 있
<u>야 한다</u> .	<u>다</u> 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"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"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 요를 고려한 교육, 직업체험 및 훈련, 상담,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.

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, 제4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(학교장의 책무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 (이하 "학교장"이라 한다)은 소속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연계하는 경우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 및 교육

감이 운영하는 도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

- 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,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3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, 경찰청 등 유관기관,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	제2조(정의)
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· 2. (생 략)	l.·2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3. "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"이란
	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
	수요를 고려한 교육, 직업체험 및
	훈련, 상담,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
	<u>말한다.</u>
<u>3</u> . (생 략)	<u>4</u> . (현행 제3호와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제4조(학교장의 책무) ①「초・중등교
	육법」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
	(이하 "학교장"이라 한다)은 소속
	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
	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
	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, 「학
	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
	5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
	<u>한다.</u>
<u>〈신 설〉</u>	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연계하는
	경우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
	법률」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개
	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 및 교육
	감이 운영하는 도움센터에 제공할 수
	있다.
<u>〈신 설〉</u>	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,
	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

제4조 ~ 제11조 (생 략)

〈신 설〉

제12조 (생략)

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 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<u>제5조</u> ~ <u>제12조</u> (현행 제4조부터 제11 조까지와 같음)

제13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교육지원 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, 경찰청 등 유관기관,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